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12 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만희·이인선·배준영

박정하 • 이종욱 • 백종헌

강선영 · 이달희 · 박형수

박성민 · 정점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3. 4. 27. 시행)됨으로써 범죄예방,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.

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「자율방범대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

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11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법률 제 호

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						특례유형				존속기한		
219	「자율방범대 률」 제14조의		및	운영에	관한	법	사용. 여	료등의	감면	및	양	2030.	12.	31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